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7진정0145600 대학교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모집 시 남성 배제

진 정 인 ○○○

피진정인 ○○전문대학 총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항공기 객실승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문대학(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다) 항공운항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남성이다. 피진정대학 항공운항과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학과로, 일반전형에서는 남성이 지원 가능하나 특별전형에서는 여성만 지원 가능하다. 피진정대학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남성을 배제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진정한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차별 없이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일반전형에서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남학생을 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남성에게도 항공운항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주문의 요지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일반전형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2) 다만, 특별전형의 경우 고등교육법령에 근거하여 직업교육의 특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 직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남성과 여성이 1 : 100 정도의 비율로 채용되는 항공승무원이라는 전문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특별전형에서 여성 선발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3) 「고등교육법」 제47조에 의한 전문대학 설립 목적인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서는 각 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진출 현실을 적극 고려하여야 하며, 승무원이라는 직업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전형에서 여성만을 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4) 이는 전문대학 설립 목적에 따른 우리 대학의 ‘21세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문 직업인 양성’이라는 사명과,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1차 진정사건

(14진정0695900) 결정문의 반대의견에서도 ‘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자율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학과와 관련된 직업분야의 채용환경 등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하여 학생 선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전문대학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5) 우리 대학은 항공운항과와 비교하여 남성의 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공경영과의 경우 매년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으로 남성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이 본인의 적성과 관심을 고려하여 항공분야로의 진출을 원한다면 항공경영과로의 진학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6) 국가인권위원회의 1차 진정사건 결정문의 반대의견에서 언급된 ‘전국에 20개 대학교가 항공운항과를 개설하고 남성을 신입생으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학의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이 항공운항과에 진학할 기회가 봉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고려할 때, 진정인은 반드시 우리 대학이 아니더라도 타 대학 관련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 2018학년도 항공운항과 정원내 모집인원은 190명이며, 이

중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19명,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71명이다. 2018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일반전형 모집은 남성도 지원가능하나, 특별전형 모집의 경우 여성만 응시가 가능하다. 피진정대학 항공운항과 정원내 모집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진정대학 항공운항과 모집현황(정원내)

연도	특별전형			일반전형		
	모집인원	지원인원	최종합격인원	모집인원	지원인원	최종합격인원
2019	여: 171명	여: 8,768명	여: 171명	19명 (지원자격:남,여)	여: 추후 확정	여: 추후 확정
	남: 지원불가	남: 지원불가	남: 지원불가		남: 추후 확정	남: 추후 확정
2018	여: 171명	여: 8,200명	여: 171명	19명 (지원자격:남,여)	여: 572명	여: 13명
	남: 지원불가	남: 지원불가	남: 지원불가		남: 156명	남: 6명
2017	171명 (지원자격:여)	8,802명 (지원자격:여)	171명 (지원자격:여)	19명 (지원자격:여)	771명 (지원자격:여)	19명 (지원자격:여)
2016	170명 (지원자격:여)	7,260명 (지원자격:여)	170명 (지원자격:여)	20명 (지원자격:여)	848명 (지원자격:여)	20명 (지원자격:여)
2015	153명 (지원자격:여)	7,115명 (지원자격:여)	153명 (지원자격:여)	37명 (지원자격:여)	724명 (지원자격:여)	37명 (지원자격:여)

나. 2018년도 이전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모집 시 모두 지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였으나, 2015. 3. 23. 국가인권위원회가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남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14진정0695900, 전원위 결정)한 이후 피진정대학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2018년 이후에는 모집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일반전형에 한해 지원 자격을 남성까지 확대하였다. 2018년도 항공운항과 남학생 최종 합격자 수는 6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인 190명 대비 3%이다.

다. 피진정대학 항공운항과의 주요 취업처이자 졸업생들이 취업 목표로

삼는 곳은 ○○항공으로, 매년 졸업생의 약 50%가 상기 항공사에 취업하고 있으며, 취업현황은 <표 2>와 같다. 또한 피진정대학은 ○○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학원 소속이며, ○○항공은 ○○그룹의 대표 계열사이다.

<표 2> 피진정대학 항공운항과 취업현황

구분	2014년 졸업	2015년 졸업	2016년 졸업
○○항공	94명	101명	98명
국내·외국 항공사	4명	17명	10명
일반직	10명	14명	30명
취업 총인원	108명	132명	138명

※ 출처 : 피진정대학 홈페이지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시설의 교육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피진정대학의 항공운항과 모집 시 남성 배제 진정사건(2015. 3. 23. 전원위 결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이 설립 목적에 비추어 학생의 선발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을 모두 금지할 수는 없으나 성별에 따른 학생선발의 차별처우 목적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기본 규정에 위배되거나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면 대학에

게 부여된 학생 선발의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교육의 결과 수행하게 될 직무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 온 직무라는 이유는 교육대상을 여성만으로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진정인은 「고등교육법」 제47조에 의한 전문대학 설립 목적인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서는 각 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진출 현실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승무원이라는 직업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전형에서는 여성만을 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이 특정 성별로만 구성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사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일 뿐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불가피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고등교육법령에 근거한 특별전형의 원칙인 직업교육의 특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 직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의 우선적 반영을 고려한다면, 남성과 여성이 1 : 100정도의 비율로 채용되는 항공승무원이라는 전문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특별전형에서 여성 선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은 농어촌 소재 학교의 졸업(예정)자나 기초생활수급자(또는 그의 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주장의 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 제2항과 제40조에서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되,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성별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진정인은 항공운항과의 특별전형 모집에서 여성만을 선발하는 것이 피진정대학의 ‘21세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문 직업인 양성’이라는 사명과,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전문직업인 양성 대상이 특정 성별이어야 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은 이 사건 대학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일 수 있으나, 취업률은 이 사건 대학이 성취해야 할 목표이지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를 정당화 할 정도로 대학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남성의 경우 항공경영과 등을 지원하거나 타 대학의 항공운항과에 진학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항공운항과에 진학할 기회가 봉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대학의 경우 가장 많은 객실승무원을 채용하는 ○○항공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타 학교의 항공운학과보다 취업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 성별 제한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원자로 하여금 지원 학과나 학교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기존에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에게 항공운항과 모집(일반전형, 특별전형 모두 포함)시 지원 자격에 성별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할 필

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23.

위원장 정상환

위원 배복주

위원 임성택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한다.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발) ①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①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방법·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 직업·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